

키움캐피탈(주) 계좌운용규칙

이머니_키움증권

시행일 : 2026.09.14.

1.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 규칙

1) 매매 및 금융거래시간

매매시간		[KRX] 08:30 ~ 20:00 (정규장, 애프터마켓, 시간외거래 매수·매도 가능) [NXT] 08:00 ~ 20:00 (프리마켓, 메인마켓, 애프터마켓 매수·매도 가능) ※ 예약매매 불가
금융 거래 시간	대출(입금)	08:30 ~ 16:30 까지 (대출가능시간)
	이자(출금)	08:30 ~ 09:00, 16:00 ~ 16:30 1일 2회 (전액출금방식 : 이자출금액 부족시 미인출)
	부분상환/중도해지(출금)	08:30 ~ 16:30 까지사 홈페이지에서 상환신청)
	만기상환(해지)(출금)	16:00 부터 (전액출금방식, 부족시 연장 불가 및 해지)
	로스컷(출금)	16:00 부터 (부분출금 가능)

2) 거래가능종목 및 거래방법

거래가능종목	KOSPI,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, ETF (일부종목 거래불가)
매매가능매체	HTS, MTS, ARS, 고객센터 등 주문가능 * 증권사 사정에 따라 매매가능매체는 제한 또는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거래유형	100% 현금거래에 한함. (※신용거래, 공매도, 미수거래 불가)

3) 매수불가/보유불가종목

매매거래금지종목	매수	보유	보유금지(반대매매)시점	비고
① 관리종목	불가	불가	편입 후 재거래 즉시	
② 거래정지예정종목	불가	불가	거래정지 전일	
③ 권리락종목 (배당락 제외)	불가	불가	권리락 전일(기준일2일전)	
④ 감자·합병·액면분할·병합종목 등	불가	불가	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전일)	
⑤ 투자경고(위험)·단기과열 종목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⑥ 액면가 50%이하 종목	불가	-		▶ 전일 기준
⑦ 시가총액 코스피 500억원, 코스닥 300억원 미만 종목	불가	-		▶ 전일 기준
⑧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종목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⑨ 신규 상장종목(기업공개)	불가	-		▶ 상장일에 한함
⑩ 최근7영업일간 주가하락 50%이상 종목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⑪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	불가	-		▶ 이유없는 시세급변만 해당
⑫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	불가	-		
⑬ 5일 평균거래량 1천주미만 종목	불가	-		▶ KRX거래량 기준
⑭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재 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	불가	-		▶ 일별 조회

⑮ 주가 1천원 미만 종목	불가	-		▶ 전일 KRX 증가 기준
⑯ 금융사 지정종목 (RMS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)	불가	-		▶ 지정후 즉시

4) 기타거래제한

▪ 포트폴리오 제한: 동일종목 최대 투자비율은 100% 이내로 제한됩니다. (일부 종목 제외, 실시간 증권계좌 가치 반영) ▪ 동일종목 매수제한: 특정종목(시가총액 1,000억원 미만)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해당종목 총상장주식의 3%이하로 제한됩니다 ▪ 유동성 제한: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%이상 매수 금지됩니다.(※KRX거래량 기준) ▪ 금융사지정(시스템제한) 매수불가종목: 위험관리시스템(RMS)시스템에서 고객의 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 ▪ 대출계좌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. ▪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로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. ▪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합니다.
--

5) 입/출고 입금

▪ 대출신청 전에, 보유불가종목 기보유시, 보유불가종목 매도 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. ▪ 대출실행 후 주식 입고는 키움증권 계좌(동일인 명의)내 대체 입고만 가능하며, 타 증권사 입고 및 주식출고는 불가합니다. 단, 주식 입고시 매수불가종목, 보유불가종목, 현물은 입고 불가하며, 담보율 130% 초과분에 한해, 매수금지종목 · 보유금지종목 · 보유금지에정종목 키움증권계좌(동일인 명의) 내 주식 출고 가능합니다. ☞ 입고주식이 보유불가종목에 해당될 경우, 해당종목에 대해 자동반대매매가 실행되므로 입고 전에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종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☞ 대출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일반종목이 아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,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은 매매 불가합니다.
--

2. 자동반대매매 규칙

1) 자동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

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	자동반대매매 시기
① 정규시장 증가기준 담보비율이 120%미만 도달후 익일 오전 08시 30분까지 담보비율이 120%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☞ 장 마감 이후 이자출금 등의 사유로 담보비율이 120%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	▶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
② 관리종목	▶ 관리종목으로 편입 후 재거래 즉시
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지정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▶ 권리락 전일(기준일 2일전) 오전 동시호가 부터
④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 종목	▶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 부터
⑤ 주식병합 · 주식분할 · 감자 ·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▶ 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 전일) 오전 동시호가부터
⑥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의이익상실) 발생 후, 대출금 상황이 지연되는 경우	▶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동시호가부터
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	▶ 정리매매 시작일

2) 증권계좌 담보비율산정

증권계좌 담보비율	■ 증권계좌 담보비율 = (장중 실시간) 계좌담보평가액 ÷ 대출원금 ① 계좌담보평가액 = 주식잔고평가금액(장중 실시간 보유주식수 × 현재가) + 예수금 ☞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은 KRX 정규장 시세로 산정 ② 예수금 : D+2일 예수금 (대출원금 발생시, 예수금에 포함됨) ☞ 대출신청 전에 매수금지종목을 기보유한 경우, 최초 대출시점의 담보평가액에서 제외 ☞ 대출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일반종목이 아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,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은 담보계좌평가에서 제외됨. ☞ 관리종목 지정, 상장폐지 실질심사,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종목의 평가액을 담보비율에서 제외
----------------------	---

3) 로스컷 반대매매

로스컷 (반대매매)	■ 로스컷(반대매매)이 발생하는 경우 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%미만 도달 후 익일 오전 08시 30분까지 120%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☞ 오전 동시호가로 대출원금 상환금액 수량만큼 로스컷(반대매매) 실행 ☞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%이상 되더라도 장 마감 이후 이자출금 등의 사유로 담보비율이 120%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로스컷(반대매매)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②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 발생 후,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☞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자동반대매매 실행 ■ 로스컷(반대매매) 금액 및 수량 (KRX 기준으로 산출) ① 반대매매 금액 :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 ② 반대매매 수량 : 로스컷발생일(반대매매 실행일)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 계산 ■ 로스컷(반대매매) 순서 ① 매수금지종목 ② 종목코드(번호)가 빠른 종목 단, 로스컷 실행 후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(하한가 종목 또는 거래정지종목), 원금상환 부족분만큼 다음종목 반대매매 실행 (5분간격 재실행) ■ 로스컷(반대매매)후 출금 : 원금/이자 일괄청구방식, 부분출금 가능 ■ 로스컷(반대매매)이 실행된 계좌는 계약해지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, 대출원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계좌에 주식(현물)이 입고되는 경우,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로스컷이 실행되므로 로스컷 이후에는 주식(현물)입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 ■ 로스컷(반대매매) 경고 휴대폰 안내문자(SMS) 발송 ① 실시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+ 3%(123%), 로스컷비율 + 6%(126%) 도달시 ② 정규장 종료 후 : 담보율이 120% 미만인 고객 전체 발송 (16시, 17시) ③ KRX/NXT 애프터마켓 종료 후 : 담보율이 120% 미만인 고객 전체 발송 (20시 10분, 21시) ④ 로스컷 실행일 07시 30분 : 로스컷 대상고객 전체 ⑤ 로스컷 실행 즉시 단,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 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■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객은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반대매매(로스컷 반대매매 및 보유불가종목 반대매매 등)등의 중요한 휴대폰 안내문자(SMS) 수신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에 휴대폰번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휴대폰 번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안내문자(SMS) 수신이 불가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■ 휴대폰 통신사에 스팸등록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문자 수신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스팸 등록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중요 안내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 책임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

대출해지 유예기간	■ 로스컷(반대매매) 이후, “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” 적용 ① 로스컷 실행 후, 영업일 기준 5일 이내(15:30까지) 현금입금 또는 일부상환 등으로 로스컷비용 +2%(122%) 이상 시 재거래 가능 ② 5영업일 경과시, 대출해지 및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조치함. (5영업일 15:30까지 입금가능) ③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 발생시에는 미적용함. ④ 휴대폰 안내문자(SMS) 발송(증권위험관리시스템) : “유예기간내 입금요청 / 대출해지 경고 SMS” ■ “대출해지 유예기간” 중 고객이 직접 대출금 상환 가능 (홈페이지 이용)
매수거래 정지	■ 주식매수가 정지되는 경우 ① 장중 담보비율이 120%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☞ 담보비율이 120% 이상시 매수가능 ② 로스컷(반대매매) 실행 후 담보비율이 122%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☞ 현금 입금, 일부상환, 추가변동 등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122% 이상 충족시 매수가능 ☞ 추가 변동으로 인하여 종가 기준 담보유지비율이 122% 이상 되었더라도 입금 등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재거래 가능합니다.

3. 대출약정 및 스타론 서비스약정 체결규칙

신규약정체결 (재약정포함)	■ 대출약정 체결조건
	① NICE 신용평점 355점 이상 해당 고객 →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② 신용관리대상자, 채무불이행/연체중인 고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. ③ 개인만 가능하며, 법인 및 외국인은 약정 불가합니다. ④ 민법상 성년 ⑤ 동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 한도 6억원 이내에서 대출신청하는 고객 ⑥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최저 100만원 이상인 고객 ⑦ 증권계좌에 대해 온라인 (근)질권설정을 완료한 고객 ⑧ (근)질권자에게 (근)질권설정 승낙 의뢰 또는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고객 ⑨ 증권계좌에 보유불가 종목이 없어야 하며 보유시 매도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
	■ 질권설정방식
	고객이 당사 대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(공동인증서 및 전자서명 사용)
	■ 대출조건 (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약정서 참조)

	① 대출금리 및 수수료 : <u>상품상세정보 및 대출신청완료 정보참조</u> ② 대출기간 : 1개월 / 3개월 / 6개월 (선택가능) (최초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) ③ 연체이자율 : 약정이율+최대 3%, 법정최고금리 이내 ④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 ⑤ 상환방식 : 만기일시상환방식 (중도상환 가능) ⑥ 대출한도 : 담보평가금액별 차등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담보평가금액</th><th>대출한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</td>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</td><td>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</td>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<td>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⑦ 인지세 : 대출실행시 다음과 같이 대출한도설정금액별 인지세 부과 (인지세법 제3조 제3항) (대출금에서 공제 후 입금되며, 해당인지세의 50%는 대출금융기관이 부담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출한도설정금액(추가대출 포함)</th><th>세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비과세</td>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</td><td>7만원</td></tr> <tr> <td>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</td><td>15만원</td></tr> <tr> <td>10억원 초과</td><td>35만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담보평가금액	대출한도	5천만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	1억원 초과	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	대출한도설정금액(추가대출 포함)	세액	5천만원 이하	비과세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7만원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	10억원 초과	35만원
담보평가금액	대출한도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	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																		
대출한도설정금액(추가대출 포함)	세액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비과세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7만원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	35만원																		
대출한도 설정금액	- 최대 대출한도금액 내에서 고객이 직접 설정함. ☞ 개인별 주식매입자금대출 합계금액 6억원을 초과하지 못함. (계좌별 3억) - 최대 대출한도설정금액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일부상환과 추가대출이 가능함. ① 대출한도설정금액 내 추가대출 가능금액 = (계좌평가금액 - 추가대출 전 대출잔액) × 대출한도(비율) - 추가대출 전 대출잔액 ② 보유불가종목 보유시 대출 불가 ③ 추가대출시 계좌평가금액은 매수불가종목을 제외하고 평가되므로 HTS에서 보여지는 담보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④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여야 함. - 대출금 상환시에 최소금액(10,000원 이상)을 유지하여야 대출한도가 유지되오니, 대출한도를 유지하고자 하실 경우 최소 대출금액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			
대출한도 증액/감액	-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신규약정 체결조건 ① ~ ⑩항을 충족하는 고객 ② 대출한도 증액가능금액 산정방식 = (계좌평가금액 - 대출잔액) × 대출한도(비율) - 증액 전 대출한도설정금액 ☞ 계좌평가금액 = 총 계좌평가금액 - 매수불가종목 평가액 ③ 대출금리 : 최초 대출금리와 동일 (단, 만기 연장시 연장시점의 대출금리 적용) ④ 대출기간 : 최초 대출 만기일자와 동일 ⑤ 기타조건 : 연체금리, 중도상환수수료,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조건과 동일																		
대출한도 내 추가대출	- 추가대출신청 : 스타론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 - 추가대출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 ② 계좌내 보유불가종목 미보유 ※ 단, 추가대출 가능금액 산정시 매수금지종목은 제외됩니다.																		
이자납입	① 이자 납입일 -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. 이자납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, 이자납입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(증액 및 추가대출/일부상환 시 납입일변경되지 않습니다.) ② 이자 납입 방법 -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 -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미인출 ③ 출금 방식 - 이자출금액 부족, 사고신고등록, 담보비율 121%미만 미인출, 이자 출금 후 담보율이 고객님의께서 설정한																		

	로스컷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이자 출금이 되지 않으며 연체처리됩니다. (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)						
일부상환	■ 일부상환신청 : 스타론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 ■ 일부상환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부상환 가능 ①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 (대출원금 및 이자)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 ② 일부상환 후 담보비율이 상승하는 경우						
현금인출	■ 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하여 고객 현금인출 가능 ■ 증권계좌카드 사용 불가(연계은행카드 통한 입출금 가능) ■ 증권계좌 현금 입출금 가능 시간 : 07:00~23:30 ■ 단, 아래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고객 현금인출이 추가로 제한됨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현금인출이 제한되는 경우</th><th>현금인출 가능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한종목 주식 보유비중이 60% 초과할 경우</td><td>▶ 해당주식을 일부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인출 가능 (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함)</td></tr> <tr> <td>②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중 전체 주식보유 비중이 70% 초과할 경우</td><td>▶ 해당주식을 전체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해 현금인출 가능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종목 보유시 해당종목을 제외한 담보평가금액이 130% 초과시 출금가능 ※ 담보율 130% 초과분에 한해, 매수금지종목/보유금지종목/보유금지에정종목을 키움증권계좌(동일인 명의)내 주식 출고 가능	현금인출이 제한되는 경우	현금인출 가능액	①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한종목 주식 보유비중이 6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일부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인출 가능 (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함)	②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중 전체 주식보유 비중이 7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전체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해 현금인출 가능
현금인출이 제한되는 경우	현금인출 가능액						
①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한종목 주식 보유비중이 6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일부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인출 가능 (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함)						
②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중 전체 주식보유 비중이 7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전체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해 현금인출 가능						
연장	■ 연장신청 : 최초 대출신청 시 자동만기연장 신청서 작성 ■ 연장조건 : 하기 연장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, 자동연장 가능.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① ~ ⑨항 해당 고객 ② 최초 대출신청 시 자동만기연장 신청 고객 ③ 증권계좌 담보비율 121% 이상인 고객 ④ 증권계좌 내에 만기 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■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일 만기일 처리 (만기일에 따라 이자납입일 변경될 수 있음) ■ 당월이자 전액출금 방식 : 인출금액 부족시 연장불가 ■ 연장 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		
해지	■ 해지사유 ① 약정만기일 도래 : 연장 미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부결된 경우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(자금의 사용)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☞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 ④ 담보비율 120%미만으로 인한 자동 로스컷된 경우 ■ 대출해지 및 원금상환과 동시에 스타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 질권설정 자동해지 ■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을 희망할 경우, 질권 재설정 후 신청 ■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㈜이머니(위험관리시스템 제공업체)가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㈜이머니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						

기타	▪ <u>고객은 스타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변경사항 안내 등)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(휴대폰번호 필수)를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</u> ①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, 고객이 당사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(SMS, MMS, LMS 등)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. ② 당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로 연락처 변경하여야 합니다. ③ 당사에 담보율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, 연장, 주식신규매수, 인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당국의 제도변경으로 인한 계좌운용규칙 변경	금융당국(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등 연계신용 관련 규제기관 일체)의 증시 가격제한폭확대 시행 등의 제도변경으로 거래조건 변경 시 당사에서 고객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통해 당해 변경내용 및 그에 따른 거래조건을 통보함에 동의합니다. ※ 계좌운용규칙 변경 가능 항목 ① 자동반대매매 시기 및 기준 ② 담보유지비율 ③ 현금인출 가능비율 ④ 대출금상환 유예기준 (재거래 비율) ⑤ 한종목 투자비율